

"농업·디지털·강제노동까지" **301조 조사와 맞물린** **미 USTR 보고서 주요 쟁점**

[이주의 초점]

2026년 NTE 보고서에 AI 인프라 조달, 염전 강제노동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목 (4p)

[위클리 뉴스]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파생제품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유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전쟁 장기화 시 174달러

항공기 부품 일괄 반입 가능... FTZ 자율관리 혜택도 확대
해외 직구 반품 시 온라인으로 관세·부가세 환급 (7p)

[현장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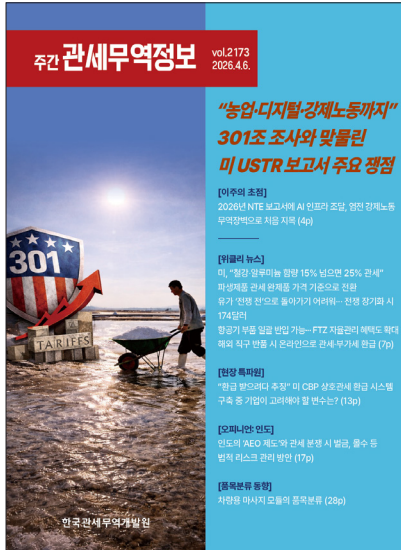
"환급 받으려다 추징" 미 CBP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
구축 중 기업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13p)

[오피니언: 인도]

인도의 'AEO 제도'와 관세 분쟁 시 벌금, 몰수 등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17p)

[품목분류 동향]

차량용 마사지 모듈의 품목분류 (28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4월 6일(통권 제217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농업·디지털·강제노동까지” 301조 조사와
맞물린 미 USTR 보고서 주요 쟁점

관세행정실무해설

- 26** 질의응답사례
관세 납부 방법

07 Weekly News

현장특파원

- 13** “돌려받을 수 있다더니 언제?” 미 상호관세 환급,
기업은 ‘대기 상태’

품목분류동향

- 28** 품목분류해설
차량용 마사지 모듈(MASSAGE MODULE
ASSY)의 품목분류
- 36** 세번 바로잡기
귀리겨의 HS Code ‘제2302호vs.제2106호’

오피니언

- 17** 시선, 인도 통관
최영훈 주인도대한민국 대사관(관세관)
관세율 높고 변동성 큰 인도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전략의 출발점은
‘AEO 제도’
장재원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벌금, 몰수 처분 대상은?
인도 관세 분쟁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

“농업·디지털·강제노동까지” 301조 조사와 맞물린 미 USTR 보고서 주요 쟁점

2026년 NTE 보고서에서 염전 강제노동, AI 인프라 조달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목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규제, 농업 시장 접근, 노동·환경,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2026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 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기술장벽 및 현안 평가 결과가 포함된다.

이번 보고서는 전년 대비 분량이 397쪽에서 534쪽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위생검역(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중심에서 나아가 ‘비시장 정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관련 분량 역시 2025년 7쪽에서 2026년 10쪽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보다 체계화·구조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6년 신규 추가된 한국 관련 지적사항 ●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및 변화
수입정책	농산물 관세할당	쌀 TRQ 운영 불투명,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
	부가가치세	수출 시 10%의 부가가치세 환급
정부조달	AI 인프라	고성능 GPU칩 등에 대한 입찰 시 국외 기업 참여 제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비시장 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에 대응 조치 미비
노동		강제노동 관련 인도보류명령(WRO),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미비 등
환경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기타	관세 회피 대응	미국과의 관세 회피 대응 협정 미체결

자료: 한국무역협회

■ 농산물 TRQ 운영 “시장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미국은 한국의 농업 분야 시장 접근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 쌀, 대두 등 주요 농산물에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쌀의 경우 국가별 쿼터가 설정돼있는데도 정부 주도의 구매·배분 구조와 불명확한 가격 산정 방식은 시장 왜곡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한국이 쌀 대신 콩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두 수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미국산 대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USTR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고기 분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추가로 언급됐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로 수출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했다.

■ 디지털·데이터 규제 “핵심 통상 이슈로 부상”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하게 언급된 문제는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규제다.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위치정보 반출 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국내 데이터 저장 의무, 인력·설비의 국내 위치 요구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지도·내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한국 기업 대비 경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논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복잡한 전자결제 인증 체계 등도 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국내 기업 중심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새롭게 문제로 제기됐다. USTR은 GPU 및 클라우드 자원 조달에서 외국 기업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차별적 조달 관행’으로 해석했다.

■ 비시장 정책·공급망 “새로운 통상 프레임 등장”

이번 보고서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 Non-market policy and practices)’ 항목이 신설된 점이다. 여기에는 ▲산업정책, ▲국산품 우선 구매, ▲과잉생산, ▲차별적 규제 집행, ▲제3국 비시장 관행 대응 미흡 등 광범위한 비시장 형태가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4월 1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비시장 형태를 제시하기보다 비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 및 합의 여부, 철강 과잉설비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멕시코가 FTA 미체결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비시장 왜곡에 대응한 사례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심이었지만, 향후 산업 정책 전반이 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관세 회피 및 우회수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 부족이 지적되면서, 원산지 관리와 세관 협력도 통상 의제로 부상했다.

■ 노동·환경 이슈 “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노동 분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격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태평양연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강제노동 이유로 인도보류 명령(WRO)을 발동한 사례를 명시하면서,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를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불법어업(IUU) 대응과 관련된 규제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이러한 노동·환경 항목은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강제노동과 공급망 문제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 통상 대응 전략 전환할 필요 “비관세 시대 본격화”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데이터·인증·환경·노동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디지털, ▲공급망, ▲노동, ▲환경을 하나의 통상 프레임으로 묶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통상 압박이 보다 정교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이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통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될 경우 일부 사안은 협의를 넘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모두 301조 조사 근거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아름 연구원은 “301조 조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노력과 향후 보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도 운영의 비차별성, 투명성 제고 등 선제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발 공급과잉, 강제노동, 관세 회피 차단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연구원은 “사실상 해당 국가의 대중국 견제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해 미 정부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무역합의로 이미 개선 또는 후속 논의 중인 사안도 언급돼 있어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사항이 양국 간 통상마찰로 이어지리라는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4월 1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비관세 현안을 협의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NTE 보고서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안을 선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포함된 파생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등의 함량가치를 산정한 뒤 해당 부분에 5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금속 중량이 15%를 넘으면 제품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미 백악관은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백악관 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면 25% 관세가 부과되며, 15% 이하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미 행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기존 방식이 제품별로 계산이 복잡하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내 알루미늄 설비 가동률이 2017년 약 39%에서 현재 약 50.4%로, 철강은 2017년 약 72.3%에서 현재 약 77.2%로 상승했다”며,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수준의 설비 가동률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전·전력기기 등 파생제품 영향 확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비중이 높은 완제품 산업이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변압기 등 전력기기 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존에는 금속 함량 부분에만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완제품 기준 관세 부과 방식은 기업의 원가 구조와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15%, 영국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120~18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김성은 기자 |

유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전쟁 장기화 시 174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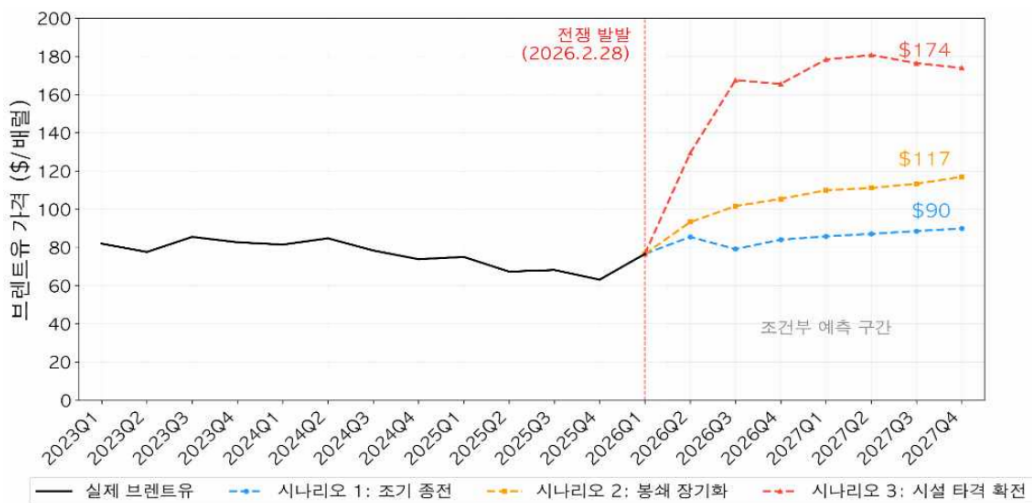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제 유가와 비료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나프타와 LNG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관세·무역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월 2일 발표한 보고서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 공급과 물류를 동시에 제약하면서 글로벌 가격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1%, 천연가스의 17%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지로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직전 배럴당 70달러 초반에서 3월 말 기준 100~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가 상승 '구조화'... 최대 174달러 시나리오

KIEP는 1일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충격의 주요국 파급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글로벌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모형(GVAR, Global Vector Autoregressive) 분석을 통해 전쟁 전개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



검은 실선은 실제 브렌트유 분기 평균, 색상 점선은 각 시나리오의 전망 경로. 빨간 수직 점선은 전쟁 발발 시점 (2026.2.28). 가로축은 분기, 세로축은 유가(미국 달러/배럴)(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기 종전 시에도 에너지 시설 복구가 지연돼 유가는 배럴당 약 90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전쟁 이전 대비 약 43% 높은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100~117달러 범위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 시설이 직접 타격되는 확전 시에는 배럴당 174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국제유가가 약 108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미 '봉쇄 장기화 시나리오'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물류 경로로, 봉쇄 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1973년과 1979년 중동발 오일쇼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중동 산유국과 이란이 감축한 원유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충격의 규모와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KIEP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데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중동 수입 비중이 약 34.4%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이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물가와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프타와 LNG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크다.

한편, 이란은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오만과 공동으로 감독하고, 통행료 부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셈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이동은 평시에도 연안국 이란과 오만의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오만과 공동의정서를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 전의 규칙이 전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일(현지시간) 전 세계 40여 개국 외무부장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 논의에 나섰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부 장관의 주도로 열린 화상회의에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회원국과 걸프국, 한국 등이 참여했으며, 군사적 대응보다는 정치·외교적 수단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성은 기자 |

항공기 부품 '일괄 반입'... 관세청, MRO 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관세청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자율관리 혜택을 확대해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4월 6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건별 승인'에서 '포괄 승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의 승인으로 일괄 반입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서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히 개조·수리할 수 있다.

FTZ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도 확대됐다.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도 외국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간 재고조사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1달러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김성은 기자 |

“해외 직구 반품·환급 한 번에” 온라인으로 관·부가세 환급 가능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직구 구매자(양도인)는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구매자가 환급권을 플랫폼에 양도하면, 별도의 수출 관련 서류 제출이나 세관 방문 없이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하다. 구매자의 환급권 양도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만 인정돼 구매자가 직접 구매·반품·수출이행·환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직구 반품 과정에서 납세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800달러 이하 면세품, 항공기 결항 시 반납 면제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또는 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개정되면서 기존처럼 면세품 회수를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면세품 반납 대상이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절차를 거쳐 귀가할 수 있다.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 반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구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대 3~4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미 개봉 및 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 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

앞으로는 면세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회수한다. 이때 여행자는 800달러 범위 내에서 회수 면제 대상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회수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류·담배 등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수 대상이 된다.

| 김성은 기자 |

크루즈 관광객도 내국세 시내서 '즉시환급'

관세청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내국세를 즉시환급 또는 도심환급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제도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크루즈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시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하며, 1회 구매금액 600만원 이하 시 도심환급이 가능하다. 짧은 체류 일정으로 인해 환급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크루즈 관광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 김성은 기자 |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발효 절차 완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 또는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해당하는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화장품, 무기류, 과일 등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UAE의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서준식 기자 |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출처: 대통령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월 1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국 모두에게 첫 번째 사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교역, 방산, 미래 산업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내 최대 경제국으로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를 목표로 CEPA 및 할랄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협력 MOU'를 개정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66개국 복수국 간 합의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협정 내 법적 편입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66개국에서 협정의 조기 적용을 위해 '임시 이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자거래 체계·송장·서명·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 전자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문서 단일창구 개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체계 마련 및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호환성을 고도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 서준식 기자 |

“돌려받을 수 있다더니 언제?” 미 상호관세 환급, 기업은 ‘대기 상태’

CBP 준비 중인 새 시스템 1단계로는 환급 대상 중 63%만 적용 가능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국내 수출기업들은 일제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환급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새로운 환급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즉각적인 환급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



‘트럼프 2기 해방의 날 1년, 미국 통상정책 성과와 향후’ 세미나 현장(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제무역법원(CIT)도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대한 환급 자격을 인정하면서 법적 근거는 사실상 정리됐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CBP는 환급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통상매체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CBP는 3월 31일 CAPE 1단계 시스템으로는 환급 대상 품목의 63%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서 진술서를 CIT에 제출했다. 또한 1단계 시스템이 환급 신청을 접수하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CBP는 “환급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CBP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규모는 약 33만개 수입업체, 5,300만건의 수입신고,

1,660억달러로 한화 약 246조 4,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통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작업이다. 브랜드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기존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인시(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의미다.

기술적 제약도 크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IEEPA 관세 항목만 선별해 제외하고 청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든 인력을 이 업무에만 투입할 경우 통관 및 국가안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CBP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철강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 부분은 50% 품목별 관세, 나머지 부분은 상호관세가 적용되기에 하나의 품목에 서로 다른 관세가 혼재돼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자환급(ACH) 계좌를 등록한 수입업체는 6%에도 미치지 못한다. CBP는 환급을 위해 약 45일 내(4월 20일까지) CAPE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영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지금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할까. 3월 31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트럼프 2기 해방의 날 1년, 미국 통상정책 성과와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환급 여부를 가를 ‘핵심 준비 단계’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CBP가 환급 준비를 공식화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후정정신고(PSC)를 신청해도 CBP 센터가 본부 지침 대기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CBP는 개별 건 처리보다는 CAPE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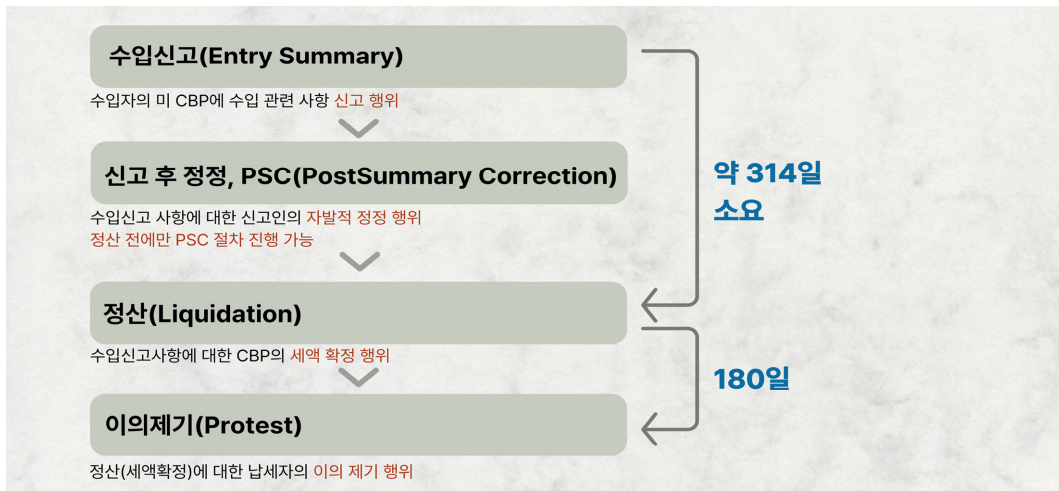
아울러 미국의 관세 환급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도 있다. 미국 관세법상 환급 청구권자는 ‘Importer of Record(IOR)’ 즉, 실제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주체다.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 수입업체가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무역거래조건(인코텀즈)상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직접 IOR이 될 수 있다. 반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이나 운임및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으로 수출한 경우라면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은 계약 관계에 따라 환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환급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세종은 2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 뉴스레터를 통해 “현지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관세 부담 및 환급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금 배분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지 수입자와의 약정 내용을 검토해 현지 수입자에게 관세 환급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그 경우 환급된 관세를 현지 수입자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와 다른 환급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CBP 환급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PSC다. 이는 관세 정산(liquidation) 이전에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이의제기(protest)’로, 정산 이후 18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셋째는 CIT 제소다. 최근 판례에 따라 CBP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송이 가능해졌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 미국의 수입신고·관세납부·불복 체계 ●



미국은 관세 신고 납부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하며,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고납부세액을 확정한다[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자료: 김태주(삼정KPMG 전무) 발표자료 참고]

그렇다면 PSC와 Protest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삼정KPMG의 김태주 전무에 따르면 PSC는 수입자(IOR) 또는 대리인이 수입신고 내용을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이며, Protest는 수입자(IOR) 또는 대리인이 정산된 수입신고 내용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PSC는 ACE 포털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정정처리하면 되지만, Protest는 ACE에서 Protest Application 신청과 함께 신청인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환급금 수령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등록된 IOR의 ACH 계좌다.

문제는 CBP가 준비 중인 CAPE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기존 절차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것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CBP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적용된 경우, 이미 최종 정산이 완료된 경우 등은 CAPE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상호관세 환급 받으려다 추징 위험

더 나아가 환급 과정은 단순한 '관세 반환' 절차가 아니라 '신고 검증 과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태주 전무는 "환급 신청 시 관세 납부 내역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관세를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오류가 있다면 환급이 아닌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심종선 회계사 역시 "최근 CBP가 환급과 동시에 기존 신고내역을 재검토하면서 추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4월 6일부터 금속 함량 15% 이상 시 완제품 가격의 25% 관세 부과), 그간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던 영역까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CBP는 철강 함량까지 산정 시 FOB 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단순 원재료 가격 기준으로 신고한 기업은 향후 추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심 회계사는 수출·수입신고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각 통관 건별로 관세납부액, 정산 여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아무런 증빙 없이 철강 함량가치를 산정한 기업은 관련 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 관세 환급 대응 타임라인 ●

ACH 환급계좌 준비 CBP 환급은 ACH 전자이체 방식으로만 지급 ACH 계좌 등록 필수 (없는 경우 현지 개설 필요) Entry별 환급계좌 매칭 필요 환급 수취인 제3자 지정 가능성 검토 필요	사후정정신고(PSC) 준비 대상: 미정산 Entry 제출 기한: Entry 후 300일 이내 또는 예정 정산일 15일 전 중 빠른 시점 준비: 수정 전·후 관세 비교표, IEEPA 관세 분리 계산	CBP 지침 발표 시 대응 증빙 패키지 사전 구축 CBP CSMS 메시지 지속 모니터링 가이던스 발표 전 선제 제출 지양 발표 즉시 실행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환급청구권 재확인 IOR 없이 DDP 조건부 수출 건 확인 필요 이 경우, 미국 구매자와의 관세환급 진행 요청 및 환급금의 안분에 관한 약정 체결 필요	이의신청(Protest) 준비 대상: 정산 완료 Entry 제출 기한: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주체: 수입자 또는 브로커 핵심 기재 내용: - IEEPA 관세 부과 법적 근거 상실 - 과다 납부 관세 환급 요청 의견서 CBP 가이던스 전, 제출이 아닌 준비 단계 유지	2년 이내 소송기한 유의 2년 이내 소송기한 유의 관할권: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제소 기한: 원인 발생 후 2년 이내
통관 및 정산현황 파악 IEEPA 관세 적용 Entry 전수 확보 납부 관세액(IEEPA 관세) 집계 및 정산일정 확인 정산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 결정 - 미정산 → PSC - 정산 완료 → Protest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자료: 김태주(삼정KPMG 전무) 발표자료 참고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자사의 수출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자사가 IOR인지 여부, 인코텀즈 조건, 현지 수입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환급금 배분 관련 조항은 향후 분쟁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통관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Entry 번호, 관세 납부 내역, 적용 관세 코드 등 환급 신청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CBP의 새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는 필수 입력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CBP 브랜드 로드 국장에 따르면 통관보류 등 검토 중인 Entry는 환급처리 후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건은 환급신청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절차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산 이전 건은 PSC, 이후 건은 Protest, 필요시 CIT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산 후 180일 이내 건에 대해서는 Protest 제기를 통해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해진다. 물론 소송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조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소송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넷째, 정책 및 제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CBP 시스템 구축 일정, 환급 범위, 미국정부의 향소 여부 등은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환급까지는 행정, 시스템, 법적 절차라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하고 추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남아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급 문제를 단순한 신청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수입신고 내역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에게 인도의 AEO 제도에 관해 들어봤다.

관세율 높고 변동성 큰 인도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전략의 출발점은 'AEO 제도'



최영훈 | 주인도대한민국 대사관(관세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통관 애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인도 통관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통관 절차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국가이기도 하다. 검사율, 추가 자료 요구, 승인 지연 등은 기업의 물류 일정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통관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인도 연방예산은 관세행정을 검사 중심 통관에서 신뢰 기반(trust-based) 통관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AEO 제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1. 인도 AEO 제도의 개요와 한국 제도와의 비교

인도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인도 국내 법적 근거는 관세법(Customs Act, 1962)과 인도 관세청 고시(Circular No. 33/2016-Customs 등)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 운영은 인도 관세당국인 중앙 간접세 및 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는 기업의 준법 수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AEO-T1 : 서류 중심 심사
- AEO-T2 : 서류 및 현장 실사
- AEO-T3 : 최고 수준의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 AEO-LO : 물류사업자(창고·운송 등)

우리나라 역시 WCO SAFE Framework에 기반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위험 기업을 우대하는 기본 철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A·AA·AAA 등급 체계를 통해 기업의 준법 수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T1에서 T3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양국 제도의 공통점은 세관과 기업 간 신뢰를 기반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등급 체계와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최근 인도 AEO 제도의 변화와 디지털 관세행정 추진

지난 몇 년간 인도정부는 AEO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류사업자(AEO-LO)의 신청 절차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T1 등급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갱신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는 신청 서류와 실적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AEO 제도를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인도정부가 AEO 제도를 단순한 인증 제도가 아니라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통관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도 내 AEO 인증 기업 수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한·인도 AEO 상호인정약정(MRA)과 OBIN 제도

우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은 한·인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다.

한국과 인도 세관당국은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약 4년만에 타결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MRA가 발효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AEO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인도 통관 과정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심사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수출기업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OBIN은 인도 관세청이 AEO MRA 체결국의 외국 AEO 수출기업에 발급하는 식별번호다.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할 때 해당 OBIN을 기재해야만 AEO MRA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이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OBIN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MRA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인도 거래처와 협력해 OBIN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이 체감하는 AEO 제도의 실질적 혜택

기업 입장에서 AEO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통관 안정성이다. AEO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율이 낮아지고 있다.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치는 항만 체류 시간을 줄이고 물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① 신속한 검사 및 통관, ② 부두직통관(Direct Port Delivery) 이용, ③ 관세납부 유예 제도, ④ 은행보증(Bank Guarantee) 감면 또는 면제, ⑤ 환급 절차의 신속 처리 등의 혜택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혜택이지만, 관세율이 높은 인도에서 신속한 통관과 납부유예 등 기본적인 혜택만 감안해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세관 담당자별로 처리 형태가 다르고 행정 절차 변동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단순한 행정 편의 수준을 넘어 현금 흐름과 공급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2026년 연방예산안과 준법관리의 중요성

2026년 인도 연방예산안은 관세행정을 신뢰 기반의 통관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체에 관세 납부를 월 단위로 허용하는 Eligible Manufacturer Importer(EMI)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준법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장기적으로는 AEO 기업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구조로 평가되고 있다. AEO는 세관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는 제도이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위반 시 제재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정지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반복적인 관세법 위반 또는 허위 신고(Serious or repeated violations of Customs law)
- ②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Deterioration of financial solvency)
- ③ 내부통제 및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미흡(Failure to maintain adequate internal control and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 ④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 취득(Obtaining AEO status through misrepresentation or false information)
- ⑤ 세관의 점검 및 자료요구 불이행(Failure to comply with Customs verification or audit requests)

일반적으로 인도 세관은 경고 → 인증 정지 → 인증 취소의 단계적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관리 등 통관 관련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준법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EO는 단순히 취득하는 인증이 아니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인도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관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대응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6년 인도 연방예산은 관세행정을 신뢰 기반 통관체계로 전환하면서 AEO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 통관 환경에서 AEO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관 인프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이 AEO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준법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면 인도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인도 관세법과 관련해 인사이트를 제안했다.

벌금, 몰수 처분 대상은? 인도 관세 분쟁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장 재 원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통합이 심화되면서 국경 간 거래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의 감시와 규정 준수(Compliance)의 복잡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의 최근 데이터는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데,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도의 누적 수입액(상품 및 서비스 합산)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약 6,511억 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상품 수입만 5,152억 1,0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이러한 데이터는 인도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을 장려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 준수를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재무부 산하 세입국(Department of Revenue) 소속의 중앙 간접세 및 관세 위원회(CBIC)는 관세, 중앙소비세, 통합부가세인 CGST(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및 IGST(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법령의 제정 및 집행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밀수 방지, 그리고 세관 및 GST 위원회와 산하 연구소 등 일선 조직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이처럼 고도로 긴장된 규제 환경 속에서, 과태료(Penalty) 및 몰수(Confiscation) 명령의 복잡한 미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인도 관세 분쟁에서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필수 요건이다. 이는 기업이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적시에 물품을 인도하며, 비용 절감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1. 법적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은 인도 세관 당국에 본 법 또는 현행 타 법령에 따른 금지 조항을 위반한 물품을 적법하게 압류(Seize)하고 몰수(Confiscate)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법, 식품안전표준법(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또는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법령 위반 시에도 관세법상 자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 규정에 초점을 맞추면, 조사 절차는 통상 제105조에 따라 시작되는데, 이는 세관 공무원에게 은닉된 물품이나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사업장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며, 기업에 즉각적인 운영·평판상 리스크를 초래한다. 이는 종종 몰수 대상 물품의 압류를 허용하는 제110조와 수반돼 공급망을 사실상 동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제110A조는 채권(Bond) 및 담보(Security) 제공을 조건으로 압류 자산의 잠정 반출(Provisional release)을 허용하는 중요한 완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은 특히 제108조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관련자 소환 권한을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된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향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대한 관세 포탈이나 금지 물품이 관련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제104조에 따라 개인을 체포할 권한이 부여돼 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신변 리스크를 상당히 고조시킨다.

제14장에 따른 재결(Adjudication) 절차가 개시되면 초점은 금전적 책임과 자산 몰수로 이동한다. 제111조와 제113조는 각각 수입품과 수출품을 몰수 대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법정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몰수는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시키는 조치이나, 제125조는 상환(Redemption) 매커니즘을 제공해 소유자가 금지 품목이 아닌 물품에 대해 몰수 대신 벌과금(Redemption Fine)을 납부하고 물품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동시에 제112조와 제114조는 물품을 몰수 대상으로 만든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태료(Penalty)를 부과해, 책임을 더 확대하고 있다. 공모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이 개입된 중대 범죄의 경우, 제114A조는 포탈세액 또는 이자액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해 재정적 관용을 배제한다. 또한 제114AA조는 허위 신고나 부정확한 자료의 고의적 사용을 처벌해 규정 준수 문서의 무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4조는 과태료 부과나 몰수가 확정되기 전 해명 요구 통지서(Show Cause Notice) 발송과 청문 기회를 의무화해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며, 이는 법적 방어의 일차적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

2. 몰수 대상이 되는 행위

반입 단계에서 물품이 승인되지 않은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하역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육로 또는 내륙 수로를 통해 반입되거나, 지정된 세관 장소가 아닌 만(Bay), 강, 감조하천 등에 불법 양륙될 경우 몰수 대상이 된다. 금지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 시도, 혹은 현행법을 위반해 인도 관세 구역으로 반입된 물품 또한 몰수된다. 나아가 **과세 대상 물품이나 금지 물품이 선박, 항공기, 차량, 포장 내에 은닉돼 있거나, 수입 적하목록(Import Manifest), 수입 보고서 또는 수하물 신고서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압류될 수 있다.**

반입 및 하역 단계를 넘어, 보관, 통관, 이동 중에도 몰수 리스크는 발생한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해 세관 구역이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다.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필수 통관 명령이 없는 육로 수입 물품, 그리고 가액, 수량, 품명 측면에서 미신고, 초과 또는 오신고(Mis-declared)된 물품 역시 위험에 노출된다. 통과(Transit) 또는 환적(Transshipment) 중 위반, 관세 면제나 수입허가에 부가된 조건의 불이행, 불법 수입 억제를 위한 지정 물품 관련 위반, 그리고 특혜 관세율의 부당한 청구 또한 몰수를 촉발한다.

요컨대,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 경로, 문서화, 면제 조건, 절차적 준수 사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일탈도 압류 및 몰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업자와 기업에게 모든 절차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인도 세관 당국과의 분쟁 대응

‘M/s Raj Metals&Alloys&Shri Mahaveer Jamnalalji Jain v. The Commissioner of Customs’ 사건에서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델리)은 적절한 라이선스가 부재한 경우를 다루며, 수입업자가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상 요구되는 필수 라이선스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111(d)조에 따른 수입 ‘Thorn’ 알루미늄 스크랩의 몰수를 인용했다. 이러한 규정 불이행은 물품을 관세법 제2(33)조하의 ‘금지품(Prohibited)’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규제 위반 사실만으로도 압류가 정당화됐다. 인도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몰수될 수 있다. 즉, 규정된 통관 절차나 법적 제한을 위반해 인도 내로 반입, 이동 또는 취급되면 몰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법부는 때때로 고의적 탈세와 선의의 오류(Bona fide errors)를 구분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 규모를 경감하는 구제책을 제공하기도 했다. ‘Super Electronics v. Collector of Customs’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입업자가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형 일반 라이선스(Open General License)의 적용 대상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를 수입한 사안을 심리했다. 해당 물품은 기술적으로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수입돼 몰수 대상이었으나, 법원은 수입업자가 이전에 유사물품을 수입한 전력이 있고 정책을 위반할 고의적 의도가 없었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입업자의 선의의 오인(Bona fide impression)을 인정해 상환 벌과금(Redemption fine)과 과태료를

대폭 감경했으며, 이는 몰수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의(Mens rea, Guilty mind)의 부재가 금전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됨을 입증했다.

물품이 몰수되면 해당 자산은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관세법상 형사 조항이 개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 봄베이 고등법원 전원합의체의 'M/s. Amritlakshmi Machine Works v. The Commissioner of Customs(Import)' 판결은 파트너십 회사와 그 파트너에게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회사가 처벌받는다든가 이유만으로 파트너에게 당연히(ipso facto)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위반에 대해 의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질 수 있으나, 파트너가 동시에 처벌받기 위해서는 '방조(Abetment)'(이는 인지 또는 범의의 입증에 포함) 혐의가 독립적으로 입증되거나, 제135(1)(a)조를 통해 제140조의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 조항이 구체적으로 원용돼야 한다. 이 판례는 해명 요구 통지서(SCN)가 위반 행위에 있어 개인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사나 파트너에 대한 자동적 과태료 부과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Gerson Da Cunha v. Commr. of Customs'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형사적 책임과 관세 납부라는 민사적 의무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뤘다. 이 분쟁은 최초 수입업자가 엔진 배기량을 허위신고(Misdeclaration)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세무 당국은 해당 수입을 구매하거나 조력한 후속 항소인들에게 공모 혐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적용해, 세무 당국이 항소인들이 허위신고할 동기가 있었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특히 그들이 더 높은 배기량의 차량에 대한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과된 벌금을 파기했다. 그러나 물품 자체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허위신고된 물품의 선의의 구매자라 할지라도 차액 관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최초 수입업자의 사기로 인해 촉발된 '제척 기간의 연장(Extended period of limitation)'은 후속 선의의 구매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형사적 또는 준형사적 공모에는 엄격한 의도 입증이 요구되지만, 관세 납부 의무는 물품에 부착돼 새로운 소유자에게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랜 선례인 1988년 대법원 'Jain Exports (P) Ltd. v. Union of India' 판결은 '산업용 코코넛 오일'이 단순히 '코코넛 오일'이라고만 명시된 금지된 '전매(Canalised)' 품목 목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입업자가 무역관행에 근거해 주장한 대로 특정 라이선스를 통해 수입 가능한지 여부를 다뤘다. 수입업자는 인도국영무역공사(STC)가 '식용' 오일만 전매한다고 명시한 서신을 근거로 '산업용' 오일은 수입이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존을 기각하며 수입정책(Import Policy)의 문언이 최우선임을 확립했다. 법원은 정책상의 '코코넛 오일'은 모든 종류를 포괄하는 유(Genus)이며, 명시적인 법적 문구가 없는 한 식용과 비식용의 구분을 해석상 읽어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STC와 같은 외부 기관의 서신이나 진술이 세관 당국에 대해 금반언(Estoppel)을 형성하거나 법적 해석을 구속할 수 없다고 확고히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세관 외 기관의 내부적 유권해석이 분쟁 시 수입정책의 명백한 법적 의미를 뒤집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Navayuga Engg. Co. Ltd. v. Union of India' 판결은 몰수 물품의 상환(Redemption)에 따른

재무적 결과에 대한 중대한 모호성을 해결했다. Navayuga Engineering은 유압 항타기를 인도국도청(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및 공공사업국(PWD, Public Works Department)의 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관세 수입했다. 그러나 회사가 이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자 세관은 장비 몰수 절차를 개시했다. 회사는 특정 '상환(Redemption)' 법률 조항에 이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압류된 물품을 재매입할 때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점(Loophole)'을 일축하며, 재매입 시에도 표준 세금 산정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이자납부가 자동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물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부과된 금액 전액, 벌과금, 세금, 그리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인은 물품이 제124조에 따라 몰수됐으므로 관세 납부는 제125조에 따른 상환의 조건일 뿐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관세 납부 청구(제28조)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 조항(제28-AB조)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제125조는 책임의 촉발제일 뿐이며, 해당 관세를 산정하는 기제는 여전히 제28조임을 명확히 해 이 논리를 타파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환된 물품에 대한 관세 산정을 위해 제28조의 기제가 가동되는 순간, 제28-AB조에 따른 이자 납부 의무는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4. 리스크 관리 방안

오늘날 강화된 관세 집행 체제에서 지연, 불투명성, 중개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함이 아니라 중대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됐다. 상기 언급한 판결 이후의 사법적 경향은 시간, 의도(Intent), 그리고 개인적 책임(Personal Accountability)이 이제 관세 리스크 노출의 중심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분쟁의 조기 억제, 방어 가능한 문서화를 결합해 관세 컴플라이언스를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 거버넌스에 내재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과 경영진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

인도 관세법상 리스크는 더 이상 항구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록을 통해, 그리고 전략적인 법적 정밀성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 기업은 관세 컴플라이언스를 물류적 요식행위에서 전략적 리스크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인도 관세법은 제47(2)조 및 제51(2)조에 따라 지연된 납부에 대해 의무적인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증가하는 금융 부채로 전환시키고 있다. 동시에 제28(4)조에 따라 고의적 정보 은닉이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통상적인 2년이 아닌 최대 5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 상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법이 반증하지 않는 한 규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제138A조)하며, 공무원들이 회사 구조를 우회해 이사 및 관리자에게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제140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과 경영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s)를 통해 확실성을 확보하고, 통지 전 협의(Pre-notice consultations)를 사용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며, 엄격한 자율심사 감사(제17조) 및 원산지 검증(제28DA조)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기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관세 납부 방법

해외 직구한 물품의 관세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송물품의 경우, 납부(고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지참한 뒤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 접속 > 공과금납부 > 국고/관세 > 고지번호 입력 > 납부하기

납부고지서는 통관지 세관,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다음 경로를 따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납부고지번호) 조회 방법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통관서식 출력 > 납세고지(통보)서 또는 전자납부 > 납부내역

FTA / 최빈국 특혜관세 직접운송 입증

부탄에서 출발해 인도까지 내륙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폐 없이 인도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포함해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청 지침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 요건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습니다.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 (협정우선 적용)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해 적용
- (입증서류 요구기준)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한해 직접운송 입증서류 요구
 -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예: 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않음.
- (전체 운송경로 확인 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 경로를 확인
- (세관통제 및 비조작 여부 확인 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여부를 확인

위와 같이 제3국에서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의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또는 부탄·인도 간 운송서류와 인도·한국 간 운송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관세 면제 신청서류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하면서
관세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세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으므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③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차량용 마사지 모듈(MASSAGE MODULE ASSY)의 품목분류 - 2025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심 난 섭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I. 개요

마사지(Massage)란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법”을 뜻한다. 또한 아라비아어의 ‘압박(Mass)’과 그리스어의 ‘주무르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피부·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줘 치료하는 방법이다. 마사지는 혈액·임파액·조직액 등 체액의 흐름을 촉진해 국소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¹⁾



즉 마사지란 ‘몸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다.

마사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마사지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의학, 산업으로 확장·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대 → 중세 → 근대 의학 통합 → 현대 산업 확장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고대 문명 속의 마사지에 관해 살펴보면 기원전 5,000년 인도에서는 오일을 이용한 전신마사지, 지압, 테라피가 등장하고, 기원전 약 2,700년 전에는 중국에서 추나, 안마 요법이 등장, 2,500년 전 이집트의 벽화에는 발과 손을 주무르는 장면이 기록돼 있으며,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운동과 마사지의 결합으로 스포츠 마사지의

1) 출처: <체육학대사전>

기원이 됐고, 오일 마사지, 전문 마사지사도 등장했다.

중세, 근세시대를 지나면서 마사지기법은 승려, 치유사, 민간요법 중심으로 유지됐고, 르네상스 이후 의학·물리치료의 일부로 재평가받게 됐다. 근대에는 물리치료 체계가 확립됐으며, 스포츠, 재활, 근육 회복 분야에 정식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 마사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다각화되기 시작했고, 의학·재활 마사지 와 웰니스 산업과 더불어 기술 융합시대에 접어들었다. 전동 마사지기, 마사지체어 등 마사지 관련 용품은 확산 추세에 있다.

그 중 눈여겨볼 만한 점이 고급 자동차 시트에 마사지 모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요즘 뜨겁게 화두가 되는 자동차 자율주행과도 맞물려 자동차 시트에 마사지 모듈 적용은 점차 확산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사지 모듈은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에 맞춰 마사지 기능은 각종 산업과 연결되고 있으며, 자동차 시트 등으로 지속 확산·발전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 기술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최근 쟁점이 됐던 고급 자동차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 ‘MESSAGE MODULE ASSY’가 어떤 물품인지 살펴보고,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을 해설하고자 한다.

II. 쟁점 사례

1. 쟁점물품: MESSAGE MODULE ASSY 물품 ①

1) 개요

- BLDC Motor, Eccentric Shaft, Plate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타격식 마사지 모듈

※ 제시된 상태 그대로 추가가공 없이 장착되는 물품임.

- 크기(W×D×H): 259×94×84.8mm

- 용도: 자동차 승객의 등 및 다리 부위에 마사지 기능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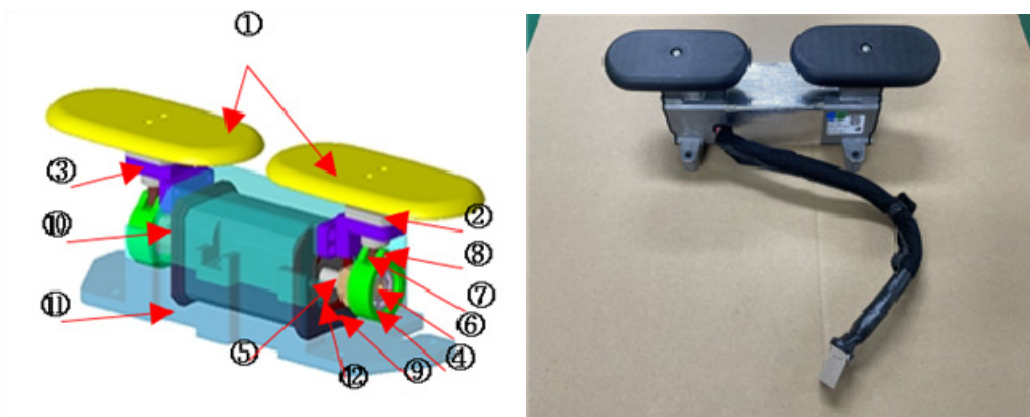
- 작동 원리: 모터의 회전력이 모터축의 샤프트(Shaft)로 전달되고, 샤프트와 연결된 베어링(Bearing)은 편심 회전해 플레이트를 수직으로 움직이게 함(두드림 효과).

- 특허명(업체 제시): 자동차용 시트의 레그레스트 마사지 장치

2) 구성 요소

No	Part Name	기능	No	Part Name	기능
1	PLATEI	연직 방향으로 마사지 기능 전달	7	SLIDE SHAFT	BEARING LOAD의 수직 방향 운동 전달
2	LINEAR BUSHING	SLIDE SHAFT의 상하 운동을 도움	8	PIN	BEARING LOAD에 SLIDE SHAFT 고정
3	LM GUIDE	LINEAR BUSHING을 고정함	9	RUBBER DAMPER	Motor와 Case 사이 진동 저감
4	BEARING LOAD	BEARING에 조립돼 회전운동을 수직운동으로 변환	10	MOTOR CASE UPPER	BLDC MOTOR 고정
5	ECCENTRIC SHAFT	모터 축에 연결돼 편심 회전	11	MOTOR CASE LOWER	BLDC MOTOR를 고정 및 프레임과 체결을 도움
6	BEARING	편심 회전의 원활한 구동 역할	12	BLDC MOTOR	전원을 인가받아 회전 운동 발생

3) 물품 이미지



2. 쟁점물품: MASSAGE MODULE ASSY 물품 ②

1) 개요

- Magnet, Weight, Vibration Rubber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진동식 마사지 모듈

※ 제시된 상태 그대로 추가가공 없이 장착되는 물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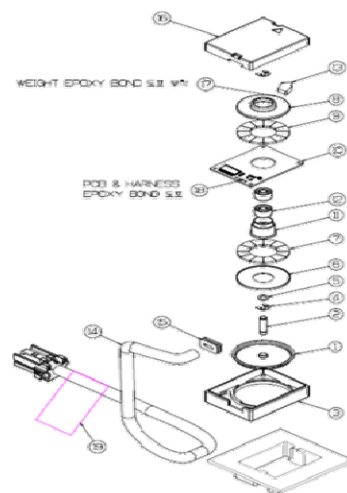
- 크기(W×D×H): 60×60×15.5mm

- 용도: 자동차 승객의 골반 및 종아리 부위에 마사지 기능 구현
- 작동 원리: Upper Magnet 상단부에 부착돼 있는 Weight(무게추)를 통해 편심 회전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진동이 발생, 발생된 진동은 Vibration Rubber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특허명(업체 제시): 시트의 진동모터 어셈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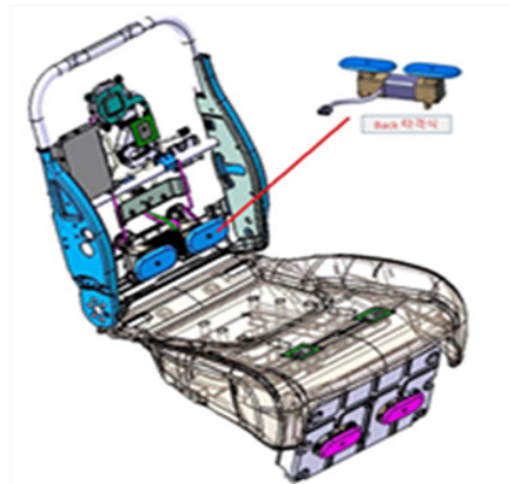
2) 구성 요소

No	Part Name	기능	No	Part Name	기능
1	MOTOR CASE	SHAFT 축 지지	11	ROTOR SHAFT	MAGNET 조립, 회전
2	SHAFT	회전축	12	BALL BEARING	회전 역할
3	MOTOR HOUSING	MOTOR 하우징	13	WEIGHT	진동 발생
4	SNAP RING	볼베어링 위치 결정	14	HARNESS ASSY	진동모터 제어 연결선
5	POLY WASHER	볼베어링 지지	15	GROMMET	와이어 가이드
6	LOWER YOKE	하측 MAGNET 조립	16	MOTOR COVER	모터 커버
7	LOWER MAGNET	회전자계 역할	17	EPOXY BOND	WEIGHT 고정
8	UPPER YOKE	상측 MAGNET 조립	18	EPOXY BOND	와이어 인출부 고정
9	UPPER MAGNET	회전자계 역할	19	LABEL	제품사양 표기
10	PCB ASSY	모터 구동회로	20	VIBRATION RUBBER	진동 발생 면적 증가 역할

3) 물품 이미지



4) 장착 위치: 자동차 2열시트(등, 다리, 골반, 종아리 부위)



3. 쟁점사항

본 물품의 쟁점사항은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편심 회전을 이용한 마사지 모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봐 제8479.89-9099호에 분류할 것인지, 마사지용 기계로 봐 제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다.

4.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사항

1) 갑론: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그 밖의 기계류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I)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서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빈(bin)·호퍼(hopper)·컨베이어·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6) 전자(電磁) 진동기”를 예시함.

본 물품은 ① 베어링의 편심 회전을 수직운동으로 변환해 Plate를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② 무게추의 편심 회전을 통해 Vibration Rubber를 진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모터의 동력을 이용한 기계적인 원리로 작동하므로 제84류의 물품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능은 제84류에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고, 부착될 기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부착될 기기의 기능과 별개로 독립해 작동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제847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2) 을론: 제9019.10-200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며, HSK 제9019.10-2000호에는 ‘마사지용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라고 설명함.

본 물품은 ① 베어링의 편심 회전을 수직운동으로 변환하는 기능 외에 Plate를 연직 방향으로 움직여(② 무게추의 편심 회전을 통해 진동을 일으키는 기능 외에 Vibration Rubber를 통해 진동을 고루 퍼지게 해) 탑승자에게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로서, 제901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참고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진동 모터와 전자 진동기는 범용성 기계류로서 특정 물품용이나 공업용이 아닌 물품들을 예시한 것으로, 본 물품은 마사지 기능을 위한 ① Plate(② Vibration Rubber)를 갖추고 있으므로 예시 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물품은 마사지용 기기로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5.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제9019.10-2000호에 분류

III.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해설 및 시사점

‘MASSAGE MODULE ASSY’ 품목분류의 경우 제시된 상태에서 마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이후 차량 시트에 장착될 수 있는 Assembly 형태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매커니즘 자체의 동작하는 방식의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제시된 상태에서의 물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이며, 어떤 특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일 것이다.

쟁점이 되는 HS를 찾아본다면 제90류와 제84류를 고려해야 하고, 둘 중에서는 제16부 주의 제외규정(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타. 제90류의 물품”)에 따라 제90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제90류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관세율표의 구조는 뒤로 갈수록 기술 집약도가 높은 물품으로 구성되며, 제84류, 제85류가 범용 기계 및 전기기기를 포괄하는 반면, 제90류는 의료기기와 정밀기기, 측정기기 등 고부가가치 기술 장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90류의 물품 즉 의료기구나 정밀 측정기기들은 제84류와 제85류, 제90류의 물품들이 복합·융합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들이다. 그렇다 보니 제90류의 기능이 있는 물품이라면 제90류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물품 ‘MASSAGE MODULE ASSY’는 마사지 기능 수행을 전제로 해 기계적 동력을 제공하는 BLDC Motor와 동력을 전달하는 각종 Shaft와 Bushing, 진동을 잡아주는 Damper, 모터를 고정하고 체결 기능을 하는 Case, 연직 방향으로 마사지 기능을 전달하는 Plate, 각종 고정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 물품의 제작 목적은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는 ① 타격식 마사지 모듈, ② 진동식 마사지 모듈로 제작됐고 제시된 상태 그대로 추가 가공없이 장착되는 모듈이다.

본 물품 구성 요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① 모터와 베어링의 편심 회전을 수직운동으로 변환하는 요소와 ② 무계추의 편심 회전을 통해 진동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 즉 모터의 회전력으로 수직운동이나 진동운동을 하는 기능으로만 본다면 제8479호에 분류 가능한 상태의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직방향으로 마사지 기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인 ① Plate와 ② Vibration Rubber는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로서의 구성 요소로 판단된다.

구성 요소가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과 제9019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돼 ‘마사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제9019호에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8479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기계적인 요소를 갖춘 기능이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서 규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제84류에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고, 부착될 기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부착될 기기의 기능과 별개로 독립해 작동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어야 할 것이다.

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제시된 상태에서의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그 기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 제90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동력을 이용하는 대부분 기계는 모터와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로 구성되고, 그 동력을 어디에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계(장비)의 목적이 정해진다. 제84류, 제85류를 벗어나는 물품은 기계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 센서에 의한 측정 이런 요소들이 복합돼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기계(장비)로 재탄생하므로 품목분류 시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목적을 잘 살펴 품목분류 해야 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귀리겨의 HS Code '제2302호vs.제2106호'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최근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겨(oat bran)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귀리는 외피를 벗겨내는 도정 과정을 거쳐 오토밀이나 가루 형태로 가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되는 '겨' 부분은 과거 단순한 사료용 부산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기능성 식품 원료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품목분류 체계상 곡물의 탈피나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통상 제2302호(곡물의 체질·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에서 생긴 밀기울·왕겨와 부산물)에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제2302호로 신고됐던 귀리겨가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해당 물품이 단순히 도정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벗어나 식용에 적합하도록 특정한 공정(선별, 영양성분 조정 등)을 거쳤거나 식품첨가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됐을 때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미황색 분말상의 귀리겨 식이섬유로 밀기울·쌀겨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에 해당하는 제2302.40-9000호로 신고했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고시한 귀리겨의 성분 함량은 통상 단백질 약 17%, 식이섬유 약 23%, 전분 약 49% 정도다. 본 물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 약 0.5%, 전분 함량 약 2%인데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약 85%로 매우 높아 일반 귀리겨와는 성분상 차이가 확인됐다.

이는 특정 공정을 통해 당, 단백질 등의 성분을 제거해 식이섬유 함량을 높여 식품 제조용[소화 촉진, 포만감 부여 등(식이조절)]으로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2302호에 해당하는 곡물 부산물로 보기보다는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 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을 귀리겨(Oat bran)에서 얻은 식이섬유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AT BRAN PELLETS	2302.40-9000 (C 5%)	Food preparations	2106.90-9099 (A 8%)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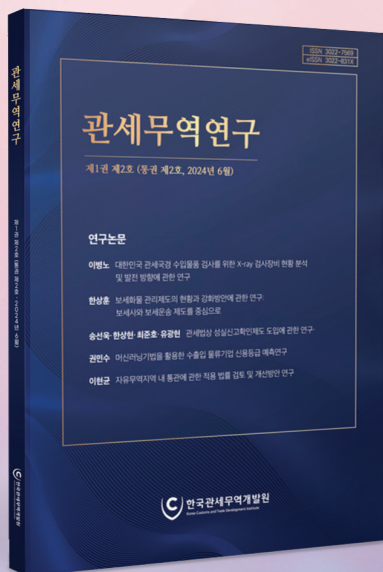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